



의안번호

제67호

**논산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
제 출 자	논 산 시 장
제출연월일	2017. 9. 8.

논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67호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7. 9. 8.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- 「논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2조의2에 명시된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논산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을 통한 행복한 노년생활 및 노인복지 지원사업 활성화에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
(안 제2조의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참조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타사항

(1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

(2) 성별영향분석평가: 개선사항 없음

(3) 규제심사: 규제심사 대상 아님

(4)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

(가) 예고기간: 2017. 06. 23. ~ 07. 14.

(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(5) 비용추계서 : 붙임참조

(6) 충청남도 소관실과 : 저출산고령화정책과 (041-635-4222)

(7)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: 2017.5.24.~ 5.25.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일부개정 조례안

논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 중 “2017년” 을 “2022년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 안 자	100세 행복과장	박 용 규
	동고동락팀장	이 은 정
	담 당 자	지 창 하 (746-5333)

□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<u>2017년</u>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속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2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----- ----- <u>2022년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제2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2. 비용추계결과

- 2017년도 기금사용을 위한 위원회 운영수당 발생으로 추계
 - 100,000원 × 3명 = 300천원/년간
 - 300,000원/년간 × 5년 = 1,500천원

3. 작성자

100세행복과장 박용규

〈연도별 비용추계표〉

(단위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17년)	2차년도 (2018년)	3차년도 (2019년)	4차년도 (2020년)	5차년도 (2021년)	계
세 입						
시 비						
세 출						
201-01 사무관리비 위원회 운영수당	300	300	300	300	300	1,500
재원 조달						
의존 재원	소 계					
	보조금					
	지방교부세					
자체 수입	소 계					
	지방세					
	세외수입					
지방채						
기 금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③ 제1항에서 “재산“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참고 2**논산시 노인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**

구 분	직 위	성 명	비 고
계		7명	
위원장	부시장	홍성목	
부위원장	(전)의회사무국장	윤병권	
위원	대한노인회논산시 지회사무국장	김오형	
위원	친절행정국장	김현익	
위원	논산시의회	김진호	
위원	정책보좌관	안성률	
위원	새마을부녀 협의회장	김입분	